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45

발의연월일: 2025. 3. 25.

발 의 자: 강준현 · 민병덕 · 오세희

한민수 · 문진석 · 이기헌

신영대 · 천하람 · 이정문

김주영 · 이강일 · 김용만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사업자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한 보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지급보증 의무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공정위가 조사한 건설 분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점검 결과, 551건의 지급보증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됨. 담당자 과실 로 지급보증 미가입, 계약사항 변경에도 지급보증 미갱신, 지연 가입 등 위반의 유형 또한 다양함.

게다가 최근의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 및 자금 경색 등으로 중소 기업의 부담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금 지급마저 원활히 이뤄지지 못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급보증 의무 예외사유 중 원사업

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 여력을 강화하고자 함.

또, 현행법에는 일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렇지만 최소 2회분 이상의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야 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대금의 현금비율과 다르게 수급사업자 에게 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없어 규 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은 압류나 양도, 면제 처분 등을 할 수 없도록 해 대금 채권의 이행을 우선순위로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1건의 공사금 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 나.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 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로 수급사업

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3호, 제5호 신설).

다.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 급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와 양도·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을 "하도급대금을"로, "지급하지"를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의 금지) 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없고, 원사업자는 이를 양도·면제 등 처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압류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	및 대금지급 보증) ①		
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			
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			
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			
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			
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			
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			
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			
만, <u>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u>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			
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			
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
 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
 접 지급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u>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u>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u>지급하지</u>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4. (생략)

<신 설>

② ~ ⑥ (생 략) <신 설>

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1.・2. (현행과 같음)
3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
하지
<u> </u>
4. (현행과 같음)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
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
· · · · · · · · · · · · · ·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하도급대금에 대한 압

류 등의 금지) ① 발주자가 원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원사업자는 이를 양도·면제등 처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하도급대금에 상당 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